



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9월

CONTENTS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세무동향

-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예규판례

○ 법원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 관련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기획재정부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 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 CFC 배제특례' 적용 여부
-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 4에 따른 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등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 국세청

-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배당 재원의 순서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9.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 및 확대(조특령 별표 7의 2)

[〈개정안〉](#)

- 세부기술 대상 확대(인공지능 분야 추가, 7개 신설, 2개 확대)

분야		세부기술
신설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확대	미래형 운송이동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

○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조특령 별표 7)

[〈개정안〉](#)

- 세부기술 대상 확대(1개 신설)

분야		세부기술
신설	방위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 1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상향(미래차: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

○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 마련(조특령 §21⑤·⑩·⑪·⑭·⑯)

[〈개정안〉](#) 서비스 제공(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사후관리 방안 마련

- (관리대상)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시설 포함
- (관리기준) 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해당 시설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시간이 50% 초과
- (자료제출) 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연구개발업무시설 규정 준용(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시설투자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기액요건 상향(조특령 §68 의 2①)
 〈개정안〉 지원대상 확대
 - 비수도권 기액기준 상향(수도권 공시가격 4 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 억원)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 명확화(조특령 §100 의 24, 조특칙§46 의 2)
 〈개정안〉 신고서류 명확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 계산서)
 〈개정이유〉 동업기업 제출서류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 소득세법 시행령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소득령 §167 의 3)
 〈개정안〉 적용기한 연장('25.12.31. ⇒ '26.12.31.)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소득령 §154⑦·§167 의 5·§168 의 12)
 〈개정안〉 예외 신설
 - 토지수용시 용도 지역 판정기준일 예외 신설(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
 〈개정이유〉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합리화
- 법인세법 시행령
- CR 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법인령 §92 의 2②)
 〈개정안〉 추가과세 배제 주택 추가
 - CR 리츠가 '25.1.1.~'25.12.31.중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분에 한함)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111⑧)
 〈개정안〉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 법인)가 예탁자인 경우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해당 내국법인
 〈개정이유〉 국채 등 거래 활성화 지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종부령 §4 의 3)
 〈개정안〉 적용기한 연장('25.12.31. ⇒ '26.12.31.)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84②·③)
 〈개정안〉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25.12.31. ⇒ '27.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국조령 §111①)
 〈개정안〉 적용기한 보완
 - (적용기한) '25.12.31 일 이전 개시, '27.6.30 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세액(대상조세) 배분
은 한시적 운영)

세무동향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10.15.(수)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9.8.\)](#) 및 [행정안전부 공지사항\(2025.9.2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국세청 보도자료\(Link\)](#) / [행정안전부 공지사항\(Link\)](#)

○ 국세 연장대상

-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0.10.(금) ⇒ 10.15.(수)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10.13.(월) ⇒ 10.16.(목)

○ 지방세 연장대상

- 9.29.(월)~10.15.(수)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세목

예규판례

[법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 두 34644 판결, 파기환송)

■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 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용역수수료의 정산이 실제 이루어진 방식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이용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원고는 할인쿠폰 등을 이용객에게 발행하여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숙박상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휴점이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데에 쌍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는 할인액의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대해서까지 사전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는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도록 약정하였음. 그 약정의 내용과 실제로 초과할인액이 계산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말하는 '총 판매대금'은 '합의된 정산기간 동안의 대실, 숙박 등 모든 판매대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그러므로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초과할인금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원고와 제휴점이 체결한 이 사건 이용계약은 제휴점과 이용객이 체결한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 (...) 원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제휴점의 상품이 플랫폼에 노출되어 고객과 개별적으로 숙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음.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휴점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 사건 용역수수료는 원고와 제휴점 사이의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해졌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용역수수료 할인의 이익 역시 해당 초 이용객과 제휴점 간 숙박상품거래의 대가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별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거래의 대가와 관련된 것이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휴점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 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 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 두 58959 판결 참조).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을 정한 다음 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개별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마다 그 단위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숙박계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계약에 따라 제휴점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정산기간 범위에서 개별 숙박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모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 관련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 중 4134, 2025.7.10., 취소)

■ 쟁점

(합동)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설립된 후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조성 등의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 평택시장과 공영주차장 및 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이하 “쟁점사업” 또는 “쟁점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고, 쟁점사업에 대하여 2019~2023년 기간 동안 평택시장으로부터 약 OOO 원(위탁수수료 약 OOO 원 포함, 이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쟁점사업비”라 함)을 지급받은 후,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음

국세청장(감사관)은 2023.2.6.~2023.2.2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평택시장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26.~2024.3.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8년 제 2기~202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평택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4.5.3.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 1기~2023년 제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세법 제 26 조 제 1항 제 19 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 106 조 제 1항 제 6 호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8 항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는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 71 조 제 1항 및 제 7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처분청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쟁점단서 조항의 사업(정부업무)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자기의 예산과 책임으로 쟁점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과 관련한 계약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 평택시와 「지방공기업법」 제 7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3 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쟁점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이 건 위·수탁 관리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쟁점단서 조항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 제 71 조 제 1 항, 제 76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3 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자산)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쟁점단서 조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7.2.7. 조특법 시행령 개정 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방공사가 추가된 이유는 지방공사에게 지방공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령한 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던 점을 고려하면(청구법인은

그간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사업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 바 없음),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공단과 동일하게 쟁점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절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 지 0799, 2025.7.16., 취소)

■ 쟁점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을 물류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20.3.30. 경기도 용인시 OOO 외 13 필지에 건축물(물류센터, 이하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2020.3.31.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 16041 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 58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100 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이하 ‘쟁점부동산’)를 임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7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쟁점부동산 중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에 임대한 부분을 쟁점①부동산, BBB 물류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주)BBB’)]에 임대한 부분을 쟁점②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4.1.4.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는 창고 사용 계약서에 의한 물품보관(이하 ‘수탁창고’)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1 항은 2020.12.31.까지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 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 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7 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고 사용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물품 보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이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용도(임대업)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1 개소당 약 2,000 m² 면적의 냉동·냉장 시설을 갖춘 다수의 창고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바, 물류 수요가 고정적이고 대량인 물품의 보관·유통을 위해 장기간 여러 개의 창고를 사용하려는 사용자와는 임대창고 방식이나 수탁창고(대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은 계약서의 형식만 다를 뿐이고 물품의 입출고 및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충원한다는 점에서 그 운영 방식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료 정산 역시 사용면적을 기초로 하여 월단위로 일정액을 정산하는 임대창고 방식이나 사용 일수를 기초로 하여 사용 면적에 대하여 월 1 회 정산하는 수탁창고(대량) 방식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청구법인은 임대창고 방식의 쟁점부동산과 수탁창고 방식의 쟁점부동산 이외의 냉동·냉장 창고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10 여명을 채용하여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관리·운영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주요 기능을 제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서 또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이 건 부동산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전기, 도난 등 안전사고로 인한 보관 물품 등의 피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가입물로 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고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상하수도 등의 요금을 사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담하

고 있는 점, 고객의 요구 상황에 따라 장고 사용요금 징수 방법을 달리한다는 점만으로 청구법인이 물류터 미널 운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그 형식만을 좋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업)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 130조 제 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4 서 2756, 2025.8.19.,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 130조 제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업지역’에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사안

청구법인은 계측 및 정보통신장비 임대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9.8.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개업한 후 2020.4.9.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A(이하 “쟁점사업장”) 외 6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2022.11.22. 각 사업연도에 매입한 유형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3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에 해당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24 조 제 2 항 제 2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공업지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 제 3 호는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정요지

조특법 제 130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24 조 제 2 항 제 2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공업지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 제 3 호는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토지($12,434 m^2$)는 국토 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토지 e 음) 및 토지대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 130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 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 CFC 배제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 2025.8.20.)

■ 질의

해외지주회사(A)의 자회사(B)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의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조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해당 수동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 27 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해외지주회사(A)가 국조법 제 28 조제 3 호에 따라 CFC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 자회사(B)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국조법 시행령 제 64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법 제 27 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소재 A 법인의 지분을 52% 보유
- A 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인 B 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도매업 특례법인에 해당하나, 같은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소득 등 수동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 27 조가 적용될 예정임

회신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2 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 27 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 28 조 제 3 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 64 조 제 3 항 제 2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 45 조의 4에 따른 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 질의

- (질의 1)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4에 따른 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 (질의 2) 그 양수한 사업부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4에 따른 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이하 “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 4①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 4①의 “수혜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가액은 2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 34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 45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

■ 질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의 성격인 경우(이하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이 아닌 전환권 행사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라 함), 「주식의 발행가액(=전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 주식발행법인(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 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乙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1.x 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임
- 위 인수를 위해, A 법인(전략적투자자)과 B 법인(재무적투자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1.x. 甲법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乙법인 발행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을 인수
- B 법인은 乙법인 발행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대신,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인수에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PEF를 설립하여 질의법인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
- ‘23.x. 해당 PEF 는 투자금액의 50%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해당 PEF 에 전환우선주 를 교부

회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행정안전부]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128, 2025.7.1.)

■ 질의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으로 판결 확정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으로 결정한 경우, 조세심판원의 결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행정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국세기본법」 제 6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 등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 80 조 및 제 80 조의 2 에 따라 이러한 심판청구에 대한 취소·경정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며,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기각으로 확정판결된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경정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 결정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행정청에서는 심판청구의 경정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청]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512, 2025.8.18.)

■ 질의

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제공받은 할인혜택이 소득법§20①6에 따라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와,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소득법§12③(처)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할인이 한도 내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에서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라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처목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청]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배당 재원의 순서

(서면-2025-법규법인-0952, 2025.8.19.)

■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12. A 법인(합병법인)은 B 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재평가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은 없음
- 질의법인은 합병차익 중 재원을 특정하여 감액배당을 실시할 예정

회신

「법인세법」 제 44 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 16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 제 4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